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7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 제 20900호, 2008.7.3)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510명(변동없음)
- 지방공무원 종류별·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.
(안 제3조, 제4조)
- 기구 증설과 관련 없는 정원(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)에 대해서는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.
(안 제2조, 제5조)

3. 참고 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구미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,510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482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8명

제3조(정원채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국,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, 읍·면·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 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【별표 1】

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일 반 직	기능직·고용직	별 정직·정무직
비율	78%이상	20%이내	2%이내

비 고

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【별표 2】

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율	1%이내	7%이내	26%이내	30%이내	25%이내	11%이상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비율	3%이내	10%이내	16%이내	33%이내	38%이상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 구 직		지 도 직	
	연 구 관	연 구 사	지 도 관	지 도 사
비율	3%이내	97%이상	9%이내	91%이상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	6급	7급	8급	9급
비율		60%이내	40%이상		

【별표 3】

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기관	출장소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510	1,510					
정무직 계	1	1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157	1,157					
3급	1	1					
4급	10	5	1	1	1	2	
5급	76	27	3	4	4	11	27
6급이하계	1,070	1,070					
별정직 계	27	27					
5급 상당							
6급 상당 이하 계	27	27					
연구직 계	2	2					
연구관							
연구사	2	2					
지도직 계	33	33					
지도관	3			3			
지도사	30	30					
기능직 계	290	290					